

 <b>안산대학교</b>	<b>JA(Joint Appointment)교원 운영규정</b>	규정번호	3-3-23
		제정일자	2025.10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Joint Appointment교원(이하 "JA교원"이라 한다.)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JA교원”이란 학과(부), 행정부서 등(이하 “학과”라 한다)에 소속한 교원이 융합교육, 산학협력 및 연구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과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과 재직 교원 중 JA교원으로 발령 받은 교원
2. “원소속학과”란 임용 당시 소속학과 또는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
3. “겸무학과”란 원소속학과 외에 소속된 다른 학과
4. “겸무”란 JA교원이 겸무학과에서 담당하는 모든 업무

제3조(소속 및 임무) ① JA교원은 원소속학과에 소속하며, 겸무학과에 겸무 발령한다.

② JA교원은 원소속학과와 겸무학과의 강의, 학생지도, 산학협력, 연구,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기타 필요한 업무 등을 담당하며, 그 외 사항은 원소속학과와 겸무학과의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임용) ① 재직중인 교원의 JA교원 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JA교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자는 JA교원 신청 및 동의서[서식1]를 작성하여 원소속학과와 겸무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2. 재직교원의 JA교원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
3. 겸무학과의 신설 학과인 경우에는 겸무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JA교원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JA교원을 신규로 임용하고자 하는 원소속학과는 겸무학과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대학본부에서 JA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있다.
2. 신규임용 전형 단계별 심사위원은 원소속학과와 겸무학과 전임교원 포함한다. 다만,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소속학과 또는 겸무학과의 전임교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.
3. 그 밖의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「교원인사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5조(해지) ① JA교원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자는 JA교원 신청 및 동의서[서식1]를 작성하여 원소속학과와 겸무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재직교원의 JA교원 해지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

제6조(소속 변경) ① JA교원의 원소속학과 및 겸무학과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JA교원 신청 및 동의서[서식1]를 작성하여 원소속학과와 겸무학과 학과장의 동의 및 변경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JA교원의 소속변경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.

③ JA교원이 전임교원인 경우 원소속학과 변경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인한다.

제7조(기타사항) ① JA교원의 승진, 재임용 및 업적평가 등에 관한 심사는 원소속학과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겸무학과의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5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